

# 무인구간단속장비 대부계약서

물품의 표시 : 물품의 내역 및 설치 위치는 별첨 물품대부합의서와 같음

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(이하 갑 이라 한다)과 서울지방경찰청(이하 을 이라 한다)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5조 규정에 의하여 위 물품을 갑이 을에게 무상대부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대부 계약을 체결 한다.

제1조 (사용목적) 을은 위 물품을 남산2호터널(양방향) 지점 및 구간과 속 위반 차량 단속에 사용하여야 한다.

제2조 (대부기간) 이 계약에 위한 대부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물품의 내용연한 만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제5조에 해당하는 해지사유가 있을 때 갑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제3조 (대부료) 이 계약에 의한 물품의 대부료는 무상으로 한다.

제4조 (관리 및 비용부담) ① 물품은 을이 책임지고 유지, 보수,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하자책임보증기간 2년 동안은 납품업체에서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책임을 지도록 갑이 조치한다.

② 대부 기간 중에 물품의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 한다. 다만, 을이 예산 편성, 집행 가능한 2021년 12월31일까지는 갑이 부담 한다.

③ 을은 기계장치 등을 신기술적용 또는 효율증대·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변경 또는 교체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다른 곳으로 이전설치 할 수 있으며 이전설치시에는 갑에게 협의 하여야 한다.

④ 을은 물품관리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5조 (계약의 해지)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을이 물품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
  2. 을이 갑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물품을 사용, 수익하게 한때
- ②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1.제2조의 목적에의 사용이 종료된 때
  - 2.을이 대체물품을 확보하여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
  - 3.물품의 내용연한이 경과 한때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예정일 1월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제2항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 해지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약 해지된 물품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계약의 효력이 지속된다.

제6조 (물품의 반환) 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에게 물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제7조 (운영프로그램 및 매뉴얼의 제출) 갑은 을이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을에게 인계한다.

제8조 (해석 등) 이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각1부씩 보관한다.

2020. 01. .

(갑)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



(을)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